

#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6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12. 18.
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공공도서관이 폐기 대상 도서 등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, 이에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·방법·범위 등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.
- 이에 기증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개정안의 법적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수정주요내용

- 가. 기증의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제21조제3항).

#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서울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소장 자료를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증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2.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
  3. 그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
- 안 제21조제6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1조(기부·기증·위탁)</p> <p>①·② (생 략)</p> <p><u>③ 서울도서관장은</u> <u>기증받은 자료가</u> <u>도서관 장서로 적</u> <u>합하지 않다고 판단</u> <u>되면 관련 기관 등에</u> <u>재 기증 처리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	<p>제21조(기부·기증·위탁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1조(기부·기증·위탁)</p> <p>①·②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③ 서울도서관장은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경우, 소장 자료를</u> <u>관련 비영리 단체나</u> <u>기관 또는 공익적</u> <u>목적을 위하여 지원이</u> <u>필요하다고 인정되는</u> <u>개인에게 제23조에</u> <u>따라 설치된 서울</u> <u>도서관 운영위원회의</u> <u>의결을 거쳐 기증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제1항에 따라</u> <u>기증받은 자료가</u> <u>도서관 장서로 적합</u> <u>하지 않다고 판단</u> <u>되는 경우</u></p> <p>2. <u>폐기 대상 자료</u> <u>중 보관 상태가</u> <u>양호한 경우</u></p> <p>3. <u>그밖에 기증의</u></p>

<p>④ · ⑤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 <u>⑥ 서울도서관장은</u>  <u>독서 인문교육 강화</u>  <u>및 지식 자원 공유를</u>  <u>위하여 폐기 대상</u>  <u>도서나 그 밖의 기증</u>  <u>필요성이 있다고</u>  <u>인정하는 도서를 관련</u>  <u>기관이나 단체 또는</u>  <u>개인에게 기증할 수</u>  <u>있다.</u></p>	<p><u>필요성이 있다고</u>  <u>서울도서관장이</u>  <u>인정하는 자료</u>  ④ · ⑤ (개정안과 같음)  <u>&lt;삭제&gt;</u></p>
--	---	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서울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소장 자료를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증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
3. 그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기부 · 기증 · 위탁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<u>③ 서울도서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	<p>제21조(기부 · 기증 · 위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서울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소장 자료를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제 2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도서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증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2.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</p> <p>3. 그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